

설계자	확인자	설계년월일	2021. . .

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
타당성조사

과업지시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2
3. 과업내용.....	2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10
5. 과업수행 방법.....	12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14
7. 보안대책.....	15
II. 예정공정표.....	18

I. 과업지시서

1. 개 요

□ 과업명 : 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타당성조사

□ 과업목적 및 대상지

- 필리핀 클락 프리포트존(Free Port Zone) 內 클락스마트시티(Clark Smart City) 개발 사업은 최초의 양국 정부간 협력구조(G2G) 하에서 추진하는 본격적 도시개발 프로젝트로서, 이후 양국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의 필리핀 진출 추가 기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 이에 물류 허브, 공항도시 등 산업 기능이 가미된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수립 및 본격적 사업화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자 함.

- (대상지) 마닐라 북측 직선거리 약 80km에 위치하고 클락특별경제구역(CSEZ) 내의 클락프리포트존(CFZ)에 위치한 약 104ha(32만평) 규모로 물류허브(Smart Logistics Hub), 공항복합도시(Aerotropolis), MICE 등 상업, 휴양·의료·관광, 국제학교 및 콜센터 등 대안산업 등의 주요 컨셉을 목표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(토지주: 클락개발공사,CDC)

- 이에 따라, 본 조사는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1) 기초현황조사 및 부동산 시장조사, 2) 토지·부동산, 도시개발 및 외국인 투자개발 시행 관련 법제 분석, 3) 스마트시티 개발전략, 4)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, 5) 유망 산업 조사분석 및 시행방안 제안, 6) 재무분야 사업타당성 분석, 7)사업국 관계자 역량강화 실시를 수행하여, 투자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진단하고 필리핀 측에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 제안 및 시행 협의를 위한 기본자료를 산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※ 과업수행자는 투자이사 결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분석 및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시 과업 분야별로 글로벌·로컬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40일

3. 과업내용

1) 기초현황조사 및 부동산 시장조사

□ 기초조사 및 사업여건 분석

- 수원국 현황, 도시여건, 주요 이슈(지진, 화산폭발,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 등) 조사·분석
 - 도시의 지정학적, 인문·사회·문화적 특성, 중점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
 - 클락특별경제구역 지정목적, 혜택 및 규제, 발전현황 등 분석
 - 클락프리포트존 지정목적, 혜택 및 규제, 인구, 경제규모, 가구 등 사회경제지표 조사
 - 클락특별경제구역 및 클락프리포트존의 현장조사(토지이용현황, 지장물 및 기타장애요인 조사 등) 및 광역 위치도, 광역 도로체계 등 개발현황분석
- ※ 드론촬영 영상을 필리핀 측에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 확보 권장

□ 마닐라 도시/산업 등 분석

- 경제규모, 인구, 주택보급율, 의료·국제학교·콜센터 등 산업시설 현황, 교통 등 인프라 현황, 행정기관 분포현황, 도시화 현황 및 문제 분석 등 산업/사회경제 분석
- 마닐라의 본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유망산업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현황 및 클락의 동 산업에 대한 대체 경쟁력 분석

□ 사업대상지 주변도시(앙헬레스 등) 배후지원 기능 조사

- 주변도시 경제규모, 인구, 주택보급율, 가구 등 산업/사회경제 지표 및 도시 간 유동인구 추이, 연결 교통망 현황 조사
- 문화·사회·경제적 연관관계 및 영향도 조사·분석

□ 토지·부동산 시장 분석

- 토지 및 주택, 상업건물, 산업·업무용지 등 유형별 / 지역별 임대료 및 기타 거래가격 시장조사(마닐라 및 인근 도시지역 포함)
- 기 공급 토지 및 주택 현황조사(위치, 접근성, 공급시기, 소유계층 등)
- 용도별 / 지역별 토지 및 주택 미분양 현황조사
- 주택, 상업건물, 산업·업무용지 등 시장 선호 유형, 기존 및 예측 수요계층 등 분석
- 거시적 관점의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 및 미래 전망

□ 외국기업 도시개발(복합개발) 진출 사례 분석

- 필리핀 내 외국기업의 단독개발 및 로컬기업과의 합작 개발 사례 분석
- 마닐라 및 클락 인근 도심 개발사례 분석(토지확보, 재원조달, 분양현황, 수익성 등)
- 클락특별경제구역(CSEZ) 내 시행·계획 중인 동종·유사 사업 분석

□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 면담 및 의견 청취

- COVID-19 등 상황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우 현지 출장 또는 현지 협력기관, 외주업체 등을 통해 조사·분석

※ 기초현황조사 및 부동산 시장조사는 필리핀에서 부동산 관련 리서치 또는 마케팅 수행 경험이 있는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(컨설팅) 회사에서 수행 권장

2) 토지·부동산, 도시개발 및 외국인 투자개발 시행 관련 법제 분석

□ 토지·부동산 및 도시개발 법제 분석

- 도시개발 관련 법제 분석
 - 클락특별경제구역, 클락프리포트존 개발계획 등 상위 개발계획 검토
 - 도시개발 및 토지 관련 법령·제도 영문본 제출 및 분석
 -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이용의 분류와 규제 검토
 - 토지용도별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제한 등 건축법령 조사 분석

□ 외국인 투자개발 시행 관련 법제 분석

○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및 관련 법제 분석

-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건, 권한, 제약사항 등과 개발사업 시행자 관점에서의 관련 법제 분석
- 외국인투자법, 관련 제도 등의 영문본 제출 및 분석
- 국/내외 과소자본세제, 외환, 차입규제 등 자본구조에 대한 제약조건 분석
- 투자형태(PPP, BTL/BOT 방식 포함)에 따른 외국기업 인센티브, 세제 등 법제 분석

3) 스마트시티 개발전략

□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전략

○ 스마트시티 개발전략

- 기초조사 및 개발 경쟁력 분석에 근거한 스마트시티 개발전략 수립
- 포스트 코로나, 필리핀 클락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특화 솔루션 제시
- 클락프리포트존 및 사업지구에 타당성이 있는 스마트 인프라 컨셉플랜 제안
 - 자족·자립적 환경 확보(Ensuring a self-contained environment)
 - 지역 관리·통제를 위한 e-Governance system 제공(Provision of e-Governance systems in the management,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 of the area)
 - 위험 감소와 경쟁력 있는 비용을 유지 시킬 수 있는 스마트 상하수 관리 시스템 수립(Establishment of a Smart Water and Wastewater Management System to reduce risks and maintain a competitive utility costs)
 -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인터넷 시설 개선(Superior Telecommunication and Internet Facility)
 - 통합 대중교통시스템 및 주차시스템(Integrated Public Transport System/Parking Systems)
 - 보행자 친화적 인프라(Walkability: pedestrian friendly infrastructure)
 - 스마트도로 유틸리티 구축(Establishment of smart road utilities ; streetlights, traffic lights, CCTVs, electronic information signages, etc.)

- 스마트 고품 폐기물 관리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.(Establishment of smart solid waste management and maintenance system)
- **클락 스마트시티 스마트 솔루션 실행전략 제시**
 - 상위계획 및 도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스마트 솔루션 도입방안 검토
 - 스마트 인프라(솔루션) 기술적 타당성
 - 스마트 인프라(솔루션) 구축 및 운영 방안 수립
 - 다양한 스마트기술의 효율성 확보 및 주민참여 증대를 위한 대안제시(스마트 네트워크 등)
 - 단계별 실행 계획

4)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□ 개발컨셉 및 기본구상

- **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컨셉 및 기본구상 수립**
 - '18년 클락개발공사가 기수립한 마스터플랜 분석
 - 기초조사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고 거주환경, 주변 도시환경을 배려한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방향 검토
 - 행정, 안전, 재난대응, 교통 등 통합관제 클락 스마트시티 플랫폼 계획 수립
 - 현지 토지개발 법제, 상위계획 등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방향 수립
 - 유망 산업을 적정 반영한 클락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
- **토지용도별 배분 계획 수립**
 - 진행 중 개발사업, 타 개발사례 및 부동산 시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용도별 공간계획 수립
 - 도입기능별 대상지와 인근 지역과의 경쟁구조 분석을 통해 대상지의 용도별 수급권 범위 분석

- 인구수용 규모와 밀도, 주택 유형 및 규모, 토지용도별 배분 계획 수립

□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

○ 토지이용계획 수립

- 클락 스마트시티 토지이용계획 수립
-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
- 상업 및 업무시설 계획
- 공원 및 녹지계획
- 도로 및 교통계획
- 기타 공공시설(교육시설 등) 계획

○ 주변교통 연계방안 수립

- 국제공항, 위성도시 간 교통 연계성·접근성 검토
- 계획 중인 광역교통시설(국제공항, NSCR, Subic화물철도) 접근·연결방안
-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연계성·활용성 확보방안 검토
- 공항, 항만, 철도, 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유망 산업 공간 배치방안

○ 인프라 공급계획 수립

- 필리핀 및 클락프리포트존 도시기반시설 현황 분석
- 상위계획, 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(Infrastructure) 조성 방향 제시
- 공급처리시설 계획 수립 (진입도로, 상수, 우·오수, 전력, 통신 등)
- 친환경 개발계획 및 재해예방 저감대책 수립

□ 사업시행 계획

○ 공사비 산정 및 기반시설 재원 검토

- 현지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
- 지구외 도로, 상·하수도 등 상위계획을 고려한 본 사업구역의 기반시설

소요자원 검토

○ 사업 시행 로드맵 수립

- 복합개발사업 착공, 준공 시까지 검토 필수 항목(인허가 등) 분석 및 제시
- 단계별 시행 계획 (1단계: ex 52ha /2단계: 52ha)
- CDC가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 및 기술/비즈니스 인력구조(Organizational Structure/Technical and Business Personnel needed by CDC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.)
- 사업지구 개발 조감도 작성
- CDC와 합작계약서안 작성 (Joint Venture Agreement as part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Roadmap.)

5) 유망 산업 조사분석 및 시행방안 제안

※ 유망 산업 조사분석 : 클락프리포트존의 스마트시티에 적합한 시설선정 관련 유망 산업의 일반현황, 제도, 개발방안, 유사 사례, 필요 시설 등의 조사 분석 및 시행방안 제안

□ 클락 스마트시티 유망 산업 조사 분석

- 클락 국제공항과 수박항, 수빅화물철도와 연계한 물류허브(Logistics Hub) 시설 조사 분석
- 공항도시(Aerotropolis)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방안 제시(공항산업)
- MICE(Meetings, Incentives, Conferences, Exhibits) 등 시설사례 분석
- 상업시설(휴양·의료·관광) 및 업무(상업)시설 산업사례 분석
- 한국형 국제학교, 현지특화 대안산업(예 : 글로벌기업 Call Center 단지) 조사 분석

□ 유망 산업 시행방안 제안

- 경쟁력을 고려한 산업분석 (Industry study considering competitiveness.)
- 유망 산업별 개발계획 및 특화방안 수립
- 유망 산업별 유관 시설 설치에 따른 수익모델 분석

6) 재무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□ 사업구조 수립

○ 사업구조 수립

- 사업시행을 위한 최적의 사업구조 제시
- 본 사업의 적정 부채비율 및 타인자본 조달비용 제시

○ 사업비 및 분양가 산정

- 보상비, 공사비, 금융비용 및 기타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비 산출
- 부동산 시장조사 보고서 토대로 적정 분양·임대가격 산정

□ 재무적 타당성 분석

○ 재무모델 작성

- 사업의 주요 가정사항 및 현지 법인세, 부가세 등 주요 세제 반영된 초기 재무모델(Excel File) 작성
-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재무모델 작성
-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별 수익률 제시

○ 재무 분석

- 단계별 시행에 따른 사업성 검토
- 수익성지표 분석(NPV, ROE, ROI, 회수기간 등)
- 안정성지표 분석(DSCR, 현금과부족 발생여부 등)
- SPC 추정재무제표 작성

○ 토지 임대기간에 따른 재무 분석

- 토지임대비용 현재가치환산 반영, 임대기간에 따른 현금흐름 시나리오 분석

○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

- 자금조달 시나리오 분석(재원조달 구조 변경, 재원별: 외국자본, 국내자본 등)
-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(사업비, 운영비, 이자율, 환율, 자금조달 등)
- 환율변동 및 환전 리스크 헷지 방안 검토
- 정치적 위험,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된 보험(국제기구 보증 포함) 검토
- **재원조달계획 수립**
 - 자기자본 투입계획, 타인자본 조달계획, 분양수입을 활용한 사업비 조달계획 수립
 - 재원조달 전략수립(PPP, PF금융, ODA자금조달 등) 및 개발사례 검토

□ **사업위험 분석 (Risk Analysis)**

- 시행사 위험(인허가, SPC 설립 및 출자, 과실송금 등) 분석
- 투자 회수전략 수립 시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헷지방안
- 리스크 조치계획(Risk Management Plan) 수립
- 단계별 리스크 대응방안 및 출구전략 수립

7) 사업국 관계자 역량강화 실시

□ **사업관계자 및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**

-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 관련 클락개발공사 관계자 및 공무원 등 실무급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, 경험공유, 현장방문 등을 실시
- 중간보고회와 연계하여 수행
 - * COVID-19로 국내 초청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대안 마련

□ **워크숍 개최(1회 이상)**

- 과업성과의 제고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기관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진행
- 국내외 관련 사례 및 경험 등을 제시하여 관계자 역량강화 도모

- 성과의 중간보고, 최종보고 또는 초청연수시 병행하여 진행 가능

* COVID-19 등 상황으로 현지 출장이 어려울 경우 역량강화는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등 적정 대안으로 대체 가능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 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
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5. 과업수행 방법

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,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 - * COVID-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지 출장 조사가 어려울 시,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지업체 활용 등 대안 시행

□ 상대국 실무협의

- 대표사가 회의(온라인 포함) 개최 주관
- 업무추진 관련 e-mail 실무협의
- 현지 Contact point 운영(수행사 내 현지 인력 있을 시)
 - * 필요시 우리공사 또는 국토부의 상대국향 협의 공문 발송 요청

□ 통역 제공

- 필요시 각 보고회, 초청연수, 현지 협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역 사용

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 하여야 함
- 주간단위 계획/실적 보고 제출(이메일)
- 국토부 및 공사 요청시 추진현황 보고회의 준비/참석

□ 협업

- 과업수행자는 필리핀 정부 및 현지기관,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, 필요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 시행할 수 있음.
 -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(e.g. 현지 시장조사 등은 현지 리서치 및 마케팅 수행경험이 있는 글로벌 또는 로컬 서비스(자문) 회사에서 시행)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착수보고(국내 시행 원칙)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- 착수 보고회는 국내에서 수행하며, 상대국은 온라인참석(국문, 영문 보고 PPT 준비)
 - * 착수보고회는 '21.09.08~10 중 시행
 - * COVID-19로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
□ 중간보고 (국내 시행, 초청연수와 연계)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(국문,영문 각 5부)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- 중간보고회는 상대국 초청연수(역량강화 활동)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수행(국문, 영문보고 PPT 준비)
 - * COVID-19로 초청연수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상대국과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

추진방안 마련

□ 최종보고 (현지 수행 원칙)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(국문, 영문)
-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지시서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국문·영문 각 25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(USB 3개)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(국·영문) 및 프레젠테이션(국·영문)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 - (요약본제출) 상대국이 요구할 경우, 현지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는 요약본 별도작성 제출(국·영문 각 10부)
- 최종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 원칙(국문, 영문 보고PPT 준비)
 - *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상대국과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
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의 추정 비용, 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7. 보안대책

□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규칙 제54조(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II. 예정공정표

항목		1개월	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6개월	7개월	8개월	비고
1. 기초현황 부동산시장조사		■								
2. 토지 및 도시개발 법제 조사		■								
3.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			■							
4. 스마트시티 개발전략				■						
5. 재부분야 사업타당성 분석					■					
6. 유망산업 조사분석				■						
8. 성과품 작성(현지 및 국내의견 반영)								■		
보고회		착 수 보 고				중 간 보 고			최 종 보 고	
과업 진도 율	당기	10	10	15	15	15	15	15	5	
	누적	10	20	35	50	65	80	95	100	

* 상기에정공정표는 과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감독원과 협의·수정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반영 가능